

의안번호	2210878
의 퇴 인	정춘생의원
회 답 일	2025. 8. 20.
추 계 번호	25C3257

돌봄기본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①돌봄정책기본계획 수립·시행, ②실태조사 실시, ③돌봄지수 개발·공표, ④돌봄위원회·사무기구 설치·운영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는 추계기간 동안 총 34억 6,000만원(연평균 6억 9,200만원)으로 추계됨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임
- 이에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 연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돌봄정책기본계획 (안 제19조)	200	—	—	—	—	200	40
실태조사(안 제22조)	390	—	—	390	—	780	156
돌봄지수(안 제23조)	90	90	90	90	90	450	90
돌봄위원회·사무기구 (안 제24조·제25조)	406	406	406	406	406	2,030	406
합계	1,086	496	496	886	496	3,460	692

주: 단수 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9조 (돌봄정책기본계획 수립·시행)	(제1항) 돌봄청장은 돌봄정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2	안 제22조 (실태조사)	(제1항) 돌봄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1. 돌봄당사자의 규모 및 현황 2. 돌봄이용자의 규모, 돌봄의 내용 및 새로운 돌봄 필요 등에 관한 사항 3. 돌봄제공기관의 분포, 규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돌봄노동자의 규모, 노동조건, 처우 및 업무상 재해 등에 관한 사항 5. 비공식 돌봄 현황, 비공식 돌봄제공자 및 비공식 돌봄수혜자의 분포, 비공식 돌봄 시간, 비공식 돌봄으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부담 정도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돌봄정책수립 및 실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재량규정
3	안 제23조 (돌봄지수 등)	(제1항) 돌봄청장은 국가의 돌봄 제공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돌봄의 수요와 공급, 돌봄노동자의 처우·복지 및 비공식 돌봄제공자의 부담 정도 등의 사항이 포함된 돌봄지표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2항) 돌봄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돌봄지표를 이용하여 국가의 공적 돌봄체계와 돌봄권 보장 정도를 지수화한 돌봄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4	안 제24조 (돌봄위원회)	(제1항) 돌봄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돌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의무규정
5	안 제25조 (위원회의 사무기구)	(제1항)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6	안 제28조 (기금의 설치 등)	(제1항)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돌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의무규정
		(제2항)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의 출연금 2.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제3항) 기금은 돌봄청장이 운용·관리한다.	
7	안 제31조 (돌봄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제1항) 돌봄청장은 국민에게 돌봄에 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돌봄에 대한 수요·공급, 비공식 돌봄 제공자·비공식 돌봄수혜자·돌봄노동자·돌봄제공기관·이용자 및 돌봄 이용 현황 등에 관한 정보관리체계(이하 “돌봄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재량규정
8	안 제32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연구소·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해당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재량규정
9	안 제33조 (조사 및 연구)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기관을 설치하거나 연구소·대학 또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재량규정
10	안 제37조 (지원)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돌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정책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19조 (돌봄정책기본계획 수립·시행)	○	○ 유사사례(보건복지부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 계획’)를 준용하여 추계
2	안 제22조 (실태조사)	○	○ 유사사례(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위원관련 정책·연구개발 지원’)를 준용하여 추계
3	안 제23조 (돌봄지수 등)	○	
4	안 제24조 (돌봄위원회)	○	○ 유사사례(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위원회등 운영지원’)를 준용하여 추계
5	안 제25조 (위원회의 사무기구)	○	
6	안 제28조 (기금의 설치 등)	×	
7	안 제31조 (돌봄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8	안 제32조 (전문인력의 양성)	×	
9	안 제33조 (조사 및 연구)	×	
10	안 제37조 (지원)	×	

- (안 제28조·제31조·제32조·제33조·제37조) 제정안에서는 돌봄기금을 신설하고 돌봄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돌봄정책의 시행을 위해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고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정보가 부재하므로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함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의 부칙에서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돌봄정책기본계획 수립·시행(안 제19조)

- 돌봄정책기본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
 - 보건복지부는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2020년에 2억원의 연구용역 예산을 소요하였음
 - 제정안에서는 돌봄정책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 첫 해부터 5년마다 정책연구용역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5년마다 계획 수립 시 2억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표 2] 돌봄정책기본계획 수립·시행(안 제19조)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돌봄정책기본계획 수립·시행(안 제19조)	200	—	—	—	—	20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실태조사·돌봄지수(안 제22조·제23조)

- 돌봄정책 수립과 실행에 관한 실태조사, 돌봄지수 개발·공표 등에 대한 추가재정소요는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관련 정책 연구개발’ 사업을 준용하여 추계
 - 보건복지부는 「평생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지원」(2631-304)의 ‘사회보장관련 정책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제도평가, 정책과제 발굴 등을 실시하고 있음(2025년 예산 7억 2,000만원)

[표 3]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관련 정책 연구개발’ 관련 소요 예산(2025년)

세부사업(코드)- 내역사업	내용	2025년 예산(백만원)
평생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회보장위원회 운 영지원(2631-304) - 사회보장관련 정책 연구개발	사회보장제도 영역별 정책과제 발굴	180
	행정데이터 구축 및 기초분석	90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100
	사회보장기본계획 연도별 추진실적 평가	60
	사회보장 제도평가	290

자료: 보건복지부

- 안 제22조에 따라 3년마다 실시되는 돌봄정책 실태조사는 유사사례인 ‘사회보장관련 정책 연구개발’ 중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와 ‘사회보장 제도평가’를 준용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해에 3억 9,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

[표 4] 실태조사(안 제22조)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실태조사(안 제22조)	390	-	-	390	-	78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안 제23조에 따른 돌봄지수 개발은 유사사례인 ‘사회보장관련 정책 연구개발’ 중 ‘행정데이터 구축 및 기초분석’의 예산을 준용하여 연간 9,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

[표 5] 돌봄지수(안 제23조)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돌봄지수(안 제23조)	90	90	90	90	90	45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돌봄위원회·사무기구(안 제24조·제25조)

- 돌봄위원회 및 위원회의 사무기구 설치·운영에 대한 추가재정소요는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위원회 등 운영 지원’ 사업을 준용하여 추계
- 보건복지부는 「평생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지원」(2631-304)의 ‘사회보장위원회 등 운영 지원’ 사업을 통해 사회보장위원회 및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음(2025년 예산 4억 600만원)¹⁾

[표 6]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위원회 등 운영 지원’ 관련 소요 예산(2025년)

세부사업(코드)-내역사업	내용	2025년 예산(백만원)
평생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지원(2631-304) - 사회보장위원회 등 운영 지원	사회보장(실무, 전문)위원회 개최	
	* 위원회 개최 준비, 참석비 등(237백만원), 임차료(40백만원), 위원회 개최 제경비 등(13백만원), 여비(6백만원)	296
	복지서비스 안내 책자 발간	20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협의체 구성·운영	10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 운영	80

자료: 보건복지부

- 안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돌봄위원회 및 위원회의 사무기구 설치·운영은 유사사례인 ‘사회보장위원회 등 운영 지원 예산을 준용하여 연간 4억 6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

[표 7] 돌봄위원회·사무기구(안 제24조·제25조)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돌봄위원회·사무기구 (안 제24조·제25조)	406	406	406	406	406	2,03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 돌봄위원회 사무국의 구성 및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본 추계에서는 유사사례인 ‘사회보장위원회’와 같이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하고 해당 공무원은 돌봄청 소속으로 가정하며, 신규 공무원 채용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본 법률안의 연계법안인 정춘생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79)에서 추계함

- 추계 결과, ①돌봄정책기본계획 수립·시행, ②실태조사 실시, ③돌봄지수 개발·공표, ④돌봄위원회·사무기구 설치·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기간 동안 총 34억 6,000만원(연평균 6억 9,200만원)으로 추계됨

[표 8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 연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돌봄정책기본계획 (안 제19조)	200	—	—	—	—	200	40
실태조사(안 제22조)	390	—	—	390	—	780	156
돌봄지수(안 제23조)	90	90	90	90	90	450	90
돌봄위원회·사무기구 (안 제24조·제25조)	406	406	406	406	406	2,030	406
합계	1,086	496	496	886	496	3,460	692

주: 단수 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추계한 것이므로 제정안 시행 후 구체적 내용 및 구성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변경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박선아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선아	02-6788-4741	sunapark@assembly.go.kr